

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(수시)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

| 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|----|----|--------|----|----|
| 제 호 | | | | | | |
| 신청인 | 성명 | | | | | |
| | 주소 | | | | | |
| | 전화번호 | | | 휴대전화번호 | | |
| | 전자우편 주소 | | | | | |
| 면허종류 | | | | | | |
| 면허번호 | | | | | | |
| 면허발급일 | | | | 적성검사기간 | | ~ |
| 연기일자 | | | | | | |
| 연기사유 | 해외체류 | 질병 | 구속 | 군복무 | 재해 | 기타 |
| | | | | | | |

위 사람은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제16조의5에 따라 해당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가 연기되며, 소지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유의사항

- (주) 1. 이 확인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과 함께 소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
2.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(수시)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